

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결과(의사록)

1. 회의 개요

□ 일시 / 장소 : '22. 8. 11.(목), 10:30 ~ 18:13 / 원안위 대회의실

□ 참석자

- 위원 : 위원장, 위원 7명(김호철, 이경우, 이병령, 이수재, 이승숙, 진상현, 하정구)
- 간사 : 기획조정관
- 배석 : 안전정책국장, 방사선방재국장, KINS 원장 등

□ 상정 안건

○ 심의·의결 (3건)

- (제1호)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
- (제2호)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(안)
- (제3호)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(안)

○ 보고 (1건)

- (제1호) 한빛 3·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

□ 회의 결과

구 분		안 건 명	심의결과
심의 · 의결	제1호	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- 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범주 설정 등	원안의결
	제2호	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(안) - 신고리 5·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	원안의결
	제3호	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(안)	수정의결
보고	제1호	한빛 3·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	

2. 회의 내용

① 성원 보고

- 재적위원 총 8명중 8명 참석

② 개회 선언

③ 안전 심의·보고

【심의·의결 제1호】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

○ 주요내용

-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「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공포(‘22.6.10)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(안)

○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【심의·의결 제2호】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(안)

○ 주요내용

- 한국수력원자력(주)가 신청한 신고리 5·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(안)

○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【심의·의결 제3호】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(안)

○ 주요내용

-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축매형 수소재결합기 (PAR)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난 157회 원안위('22.5.13.)에서 결정된 ' 22년 6월에서 ' 22년 10월로 변경하는 내용

○ 심의결과: 수정의결

- PAR 실험을 “한국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6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” 를 “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8월까지 제출하되” 로 수정

【보고 제1호】 한빛 3·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

○ 주요내용

- 전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중, 대부분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된 한빛 3,4호기에 대해 공극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점검한 결과

○ 논의결과

- 전산구조공학회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추가 재보고

④ 기 타

- 한빛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관련 추가 설명자료

○ 주요내용

- 제160회 원안위(22.7.7.)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추가 설명

⑤ 위원 현안 보고

- PAR 실험 2차 경과 보고

○ 주요내용

- KAERI에서 진행되고 있는 PAR 실험 경과 및 향후 실험 계획

3. 폐 회 (18:13)